공 개

의안번호	제 52 호
의 결 연 월 일	2026. 2. 25 (제4차)

의결사항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승인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권 대 영
제출 연월일	2026. 2. 25.

1. 의결주문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가 승인 요청한 별지의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승인한다.

2. 제안이유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공시제도 마련

3. 주요골자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정의, 성실공시의무, 공시 및 신고사항 제출방법 등 규정(안 제50조의2～제50조의6)

□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법인의 공시의무부과를 위한 규정 신설(안 제50조의7～제50조의12)

○ 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 상장법인 및 기업성장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에 대한 공시신고사항, 조회공시의무 신설

□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법인의 불성실공시 제재를 위한 규정 신설(안 제50조의13～제50조의17)

□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에 대한 매매거래정지, 시장신고사항 등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법인에 대한 상장관리 방안 마련(안 제50조의18～제50조의24)

○ 조회공시 관련 불응 등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 시장 관리를 위한 시장신고사항 및 거래소 안내사항 규정

○ 거래소의 공시유보 및 정정공시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

○ 공시실무를 위한 공시책임자 및 공시대리인 신고 의무 근거 마련

○ 영문공시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

4. 참고사항

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별지>

나.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별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편부터 제4편까지를 각각 제3편부터 제5편까지로 하고, 제2편(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24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2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제1장 통칙

제50조의2(목적) 이 편은 법 제229조의2, 제391조에 따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을 상장한 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와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0조의3(정의) ①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란 법 제9조제31항의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
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란 법 제229조제6호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3.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이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
4. “기업성장투자신탁”이란 투자신탁으로 설정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말

한다.

5. “기업성장투자회사”란 투자회사로 설립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6. “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 상장법인”이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수익증권을 발행한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

7. “기업성장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이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기업성장투자회사를 말한다.

8.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법인”이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와 기업성장투자회사를 말한다.

9. “주투자대상기업”이란 법 제81조제5항제1호의 주투자대상기업을 말한다.

10. “공시책임자”란 기업성장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의 경우 법인이사를 말하고, 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 상장법인의 경우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직원 중 공시책임자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11. “불성실공시”란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법인이 이 편에 따른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신고한 내용을 번복 또는 변경하여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또는 공시변경의 유형에 해당된 경우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는 법,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 그 밖의 관계법령과 거래소의 업무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의4(적용기준) ① 이 편에서 “자산총액”은 직전 분기말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직전 분기말 이후 신규상장·합병상장·분할합병재상장한 경우에는 각 사유로 상장한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② 이 편에서 “평가금액”은 법 제229조의2제3항과 법 시행령 제241조의3제7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적용한다.

제50조의5(공시의무의 성실이행 등) ①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법인은 이 편에 따른 공시의무사항을 성실히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른 내용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기 이전에는 그 내용이 증권시장에 풍문 또는 보도 등으로 누설되거나 유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0조의6(신고 및 제출방법) ①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법인이 이 편에 따라 거래소에 공시하고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법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면(모사전송을 포함한다)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정 제3편을 따른다.

②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법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모사전송을 포함한다)제출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2장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제1절 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제50조의7(공시신고사항) 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 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의 내용을 각 호에 따른 기한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기한 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1. 기업성장투자신탁이 투자한 자산(법 제81조제5항제4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사유발생일 다음 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 법 시행령 제241조의3제9항제1호와 관련하여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자산(조합등을 통해 투자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해당 분기 중 취득·처분한 때

나.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자산[법 제9조제15항제3호가목에 따른 자산(이하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의 평가금액이 직전 평가일 대비 100분의 50 이상 변동한 때(다만, 직전 평가일 이후 해당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시점의 평가금액 대비 100분의 50 이상 변동한 때)

다.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한 상장주식(조합등을 통해 투자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기존 보유수량 대비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해당 분기 중 추가취득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 처분한 때

라.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등(법 시행령 제139조에 따른 증권으로서 조합등을 통해 투자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기존 보유수량 대비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해당 분기 중 추가취득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 처분한 때

마.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산(다·라목의 자산은 제외한다)을 직전 평가일 기준 평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해당 분기 중 추가취득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 처분한 때(다만, 직전 평가일 이후 해당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시점의 평가금액 대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해당 분기 중 추가취득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 처분한 때)

2. 법 시행령 제241조의3제9항제2호와 관련하여 해당 기업성장투자신탁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한 주투자대상기업(조합등을 통해 투

자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날의 다음 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때

다. 영업의 전부가 정지된 때

라. 「상법」 제517조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마. 법 시행령 제81조의2제3항제2호가목의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1) 상장폐지된 때(신청에 따른 상장폐지는 제외한다)

(2)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상장폐지를 신청한 때

바. 법 시행령 제81조의2제3항제2호나목의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1) 상장폐지된 때(신청에 따른 상장폐지는 제외한다)

(2)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제9호에 따른 이전상장을 위한 상장폐지를 신청한 때

사. 법 제161조제1항제6호의 사항이 발생한 때

아.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12조에 따른 신규상장신청을 한 때

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조에 따른 상장예비심사신청을 한 때

차.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1조에 따른 상장예비심사신청을 한 때

3. 해당 기업성장투자신탁의 존립과 구조에 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

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유발생일 다음 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 법 제182조제8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때

나. 법 제188조제2항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이 있은 때

다. 법 제193조에 따라 합병을 한 때

라. 법 제192조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한 때

마. 법 제25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때

4. 해당 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 상장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유발생일 다음 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 금융위원회로부터 법 제420조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운용을 위한 인가 취소처분을 받은 때

나. 금융위원회로부터 법 제420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정지 처분을 받은 때

다. 금융위원회로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7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정지를 명받은 때

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때

5. 해당 기업성장투자신탁과 관련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유발생일 다음 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 수익자총회의 결과

나.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의 분배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

다. 최근 회계기간의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라. 법 제240조에 따라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이외에 해당 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 상장법인의 주가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제50조의8(정기보고서 등의 제출) 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 상장법인은 법 제88조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 법 제90조에 따른 영업보고서, 법 제239조에 따른 결산서류를 법정제출기한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의9(조회공시) ① 거래소는 제50조의7과 제50조의8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으로서 풍문 또는 보도 등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 상장법인에게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공시매체를 통하여 해당 조회공시 요구사실과 그 내용을 공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실여부확인 요구를 받은 해당 법인은 요구일 다음 날까지 제50조의6에 따른 방법에 따라서 공시내용을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풍문 또는 보도의 내용이 1월 이내에 해당 법인이 이미 공시한 사항인 경우에는 조회공시를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조회공시 대상, 풍문 또는 보도의 범위, 그 밖에 조회공시와 관련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2절 기업성장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제50조의10(공시신고사항) 기업성장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의 내용을 각 호에 따른 기한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기한 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1. 해당 기업성장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이 투자한 자산(법 제81조제5항제4호

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사유발생일 다음 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 법 시행령 제241조의3제9항제1호와 관련하여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자산(조합등을 통해 투자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해당 분기 중 취득·처분한 때

나.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자산(상장주식은 제외한다)의 평가금액이 직전 평가일 대비 100분의 50 이상 변동한 때(다만, 직전 평가일 이후 해당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시점의 평가금액 대비 100분의 50 이상 변동한 때)

다.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한 상장주식(조합등을 통해 투자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기존 보유수량 대비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해당 분기 중 추가취득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 처분한 때

라.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등(법 시행령 제139조에 따른 증권으로서 조합등을 통해 투자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기존 보유수량 대비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해당 분기 중 추가취득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 처분한 때

마.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산(다·라목의 자산은 제외한다)을 직전 평가일 기준 평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해당 분기 중 추가취득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 처분한 때(다만, 직전 평가일 이후 해당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시점의 평가금액 대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해당 분기 중 추가취득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 처분한 때)

2. 법 시행령 제241조의3제9항제2호와 관련하여 해당 기업성장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한 주투자대상기업(조합 등을 통해 투자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날의 다음 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때

다. 영업의 전부가 정지된 때

라. 「상법」 제517조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마. 법 시행령 제81조의2제3항제2호가목의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1) 상장폐지된 때(신청에 따른 상장폐지는 제외한다)

(2)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상장폐지를 신청한 때

바. 법 시행령 제81조의2제3항제2호나목의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1) 상장폐지된 때(신청에 따른 상장폐지는 제외한다)

(2)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제9호에 따른 이전상장을 위한 상장폐지를 신청한 때

사. 법 제161조제1항제6호의 사항이 발생한 때

아.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12조에 따른 신규상장신청을 한 때

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조에 따른 상장예비심사신청을 한 때

차.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1조에 따른 상장예비심사신청을 한 때

3. 해당 기업성장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의 존립과 구조에 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유발생일 다음 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 법 제182조제8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때

나. 법 제204조에 따라 합병을 한 때

다. 법 제202조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라. 법 제25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때

4. 해당 기업성장투자회사를 설립한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에 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유발생일 다음 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 금융위원회로부터 법 제420조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운용을 위한 인가 취소처분을 받은 때

나. 금융위원회로부터 법 제420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정지 처분을 받은 때

다. 금융위원회로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7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정지를 명받은 때

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때

5. 해당 기업성장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의 기업경영활동과 관련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유발생일 다음 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확인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가. 주주총회의 결과

나.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의 분배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

다. 증자 또는 감자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라. 해당 기업성장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에 대하여 세칙에서 정하는 소송 등의 절차가 제기·신청된 때

마. 최근 회계기간의 말일을 기준으로 자기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바. 법 제240조에 따라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이외에 해당 기업성장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의 주가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제50조의11(정기보고서 등의 제출) 기업성장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은 법 제88조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 법 제90조에 따른 영업보고서, 법 제239조에 따른 결산서류를 법정제출기한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의12(조회공시) ① 거래소는 제50조의10과 제50조의11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으로서 풍문 또는 보도 등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업성장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에게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공시매체를 통하여 해당 조회공시 요구사실과 그 내용을 공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실여부확인 요구를 받은 해당 법인은 요구일 다음 날까지 제50조의6에 따른 방법에 따라서 공시내용을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풍문 또는 보도의 내용이 1월 이내에 해당 법인이 이미 공시한 사항인 경우에는 조회공시를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조회공시 대상, 풍문 또는 보도의 범위, 그 밖에 조회공시와 관련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장 불성실공시

제50조의13(불성실공시의 유형) 거래소는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불성실공시로 본다.

1. 공시불이행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50조의7부터 제50조의12까지 및 제50조의22에 따른 공시사항을 해당 신고기한까지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50조의7부터 제50조의12까지 및 제50조의22에 따른 공시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잘못 공시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공시하는 경우

2. 공시번복 : 제50조의7부터 제50조의12까지에 따라 이미 공시한 내용을 전면 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하는 경우

3. 공시변경 : 제50조의7과 제50조의10에 따라 이미 공시한 내용의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로서 세칙에서 정하는 내용을 공시하는 경우

제50조의14(자료의 제출요청) 거래소는 불성실공시 해당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0조의15(불성실공시 적용 예외) ① 거래소는 제50조의1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로 보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 규정 등에 의해 불가피한 경우

2. 천재지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3.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법인이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거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② 거래소는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법인에 대하여 공시내용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0조의16(불성실공시에 대한 조치) ① 거래소는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법인이 제50조의13에 따른 불성실공시를 한 경우에는 공시매체를 통하여 이를 공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거래소가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법인의 불성실공시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 사실과 경위 등을 증권시장지에 불성실공시를 한 날부터 5일간, 전자공시매체에 1월간 각각 게재한다.

③ 거래소는 제50조의15에 따른 불성실공시의 적용예외를 인정하여 불성실공시 내용을 공시매체에 공표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법인에게 주의촉구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불성실공시 내용의 공표, 주의촉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50조의17(공시의무 이행실태 점검 등) ① 거래소는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법인이 이 규정에 따라 공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은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법인이 제출한 영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 각종 신고서류 그 밖의 증빙자료의 요청 또는 현지출장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거래소는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법인에 대하여 공시내용과 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 이행실태 점검과 관련하여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거래소는 법 제392조제2항과 법 시행령 제361조에 따라 행정기관 그 밖에 관계기관에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법인의 공시내용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 또는 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법인 관리

제50조의18(매매거래의 정지) ①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1. 제50조의9와 제50조의12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에 대하여 그 신고시한까지 응하지 아니한 때
2.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매매거래의 정지와 재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50조의19(시장신고 사항) ① 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 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수익증권 원부 등록폐쇄 또는 기준일 설정
2.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본점 소재지 변경
3.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변경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에 시장관리를 위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

② 기업성장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2. 본점 소재지 변경
3.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변경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에 시장관리를 위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

제50조의20(시장안내사항)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체 없이 공시한다.

1. 신규상장, 추가상장, 변경상장, 관리종목의 지정과 지정해제, 상장폐지사유 발생, 제50조의18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8조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종목의 지정과 지정해제
2. 조회공시 요구내용과 공시시한
3.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0조의21(거래소에 의한 공시유보) 거래소는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법인의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의 공시를 일정기간 유보할 수 있다.

1. 공시내용이 관계 법규를 위반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때
2. 공시내용의 근거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그 내용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때
3. 그 밖에 건전한 코스닥시장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

제50조의22(기 공시내용의 변동사항 신고)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법인은 제50조의7부터 제50조의12까지에 따라 공시한 후 해당 공시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 내에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기 공시내용이 사유발생일 다음 날까지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다음 날
2. 기 공시내용이 사유발생 확인일의 다음 날까지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유발생 확인일의 다음 날

제50조의23(공시책임자 등의 신고) ① 이 편에 따른 공시는 해당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법인의 공시책임자가 하여야 한다.

②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법인은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 각 1인을 정하여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의 신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50조의24 (영문공시)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법인은 한글로 공시한 후 5매매거래일 이내에 영문으로 공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신 설>	제1장 통칙
<신 설>	제50조의2(목적) 이 편은 법 제229조의2, 제391조에 따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을 상장한 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와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50조의3(정의) ①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란 법 제9조제31항의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 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란 법 제229조제6호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3.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이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 4. “기업성장투자신탁”이란 투자신탁으로 설정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5. “기업성장투자회사”란 투자회사로 설립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6. “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 상장법인”이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수익증권을 발행한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 7. “기업성장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이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기업성장투자회사를 말한다. 8.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법인”이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와 기업성장투자회사를 말한다. 9. “주투자대상기업”이란 법 제81조제5항제1호의 주투자대상기업을 말한다. 10. “공시책임자”란 기업성장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의 경우 법인이사를 말하고, 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 상장법인의 경우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직원 중 공시책임자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11. “불성실공시”란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법인이 이 편에 따른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

	니하거나 이미 신고한 내용을 번복 또는 변경하여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또는 공시변경의 유형에 해당된 경우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는 법,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 그 밖의 관계법령과 거래소의 업무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제50조의4(적용기준) ① 이 편에서 "자산총액"은 직전 분기말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직전 분기말 이후 신규상장·합병상장·분할합병재상장한 경우에는 각 사유로 상장한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② 이 편에서 "평가금액"은 법 제229조의2제3항과 법 시행령 제241조의3제7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적용한다.
<신 설>	제50조의5(공시의무의 성실이행 등) ①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법인은 이 편에 따른 공시의무사항을 성실히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른 내용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기 이전에는 그 내용이 증권시장에 풍문 또는 보도 등으로

	누설되거나 유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50조의6(신고 및 제출방법) ①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법인이 이 편에 따라 거래소에 공시하고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법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면(모사전송을 포함한다)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정 제3편을 따른다. ②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법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모사전송을 포함한다)제출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 설>	제2장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신 설>	제1절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신 설>	제50조의7(공시신고사항) 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 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의 내용을 각 호에 따른 기한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기한 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1. 기업성장투자신탁이 투자한 자산(법 제81조제5항제4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사유발생일 다음 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 법 시행령 제241조의3제9항제1호와 관련하여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자산(조합등을 통해 투자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해당 분기 중 취득·처분한 때

나.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자산[법 제9조제15항제3호가목에 따른 자산(이하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의 평가금액이 직전 평가일 대비 100분의 50 이상 변동한 때(다만, 직전 평가일 이후 해당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시점의 평가금액 대비 100분의 50 이상 변동한 때)

다.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한 상장주식(조합

	등을 통해 투자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기존 보유수량 대비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해당 분기 중 추가취득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 처분한 때 라.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등(법 시행령 제139조에 따른 증권으로서 조합등을 통해 투자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기존 보유수량 대비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해당 분기 중 추가취득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 처분한 때 마.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산(다·라목의 자산은 제외한다)을 직전 평가일 기준 평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해당 분기 중 추가취득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 처분한 때(다만, 직전 평가일 이후 해당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시점의 평가금액 대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해당 분기 중 추가취득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 처분한 때) 2. 법 시행령 제241조의3제9항제2

	호와 관련하여 해당 기업성장투자신탁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한 주투자대상기업(조합등을 통해 투자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날의 다음 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때 다. 영업의 전부가 정지된 때 라. 「상법」제517조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마. 법 시행령 제81조의2제3항제2호가목의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1) 상장폐지된 때(신청에 따른 상장폐지는 제외한다) (2)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제2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유

	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상장폐지를 신청한 때 바. 법 시행령 제81조의2제3항제2호나목의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1) 상장폐지된 때(신청에 따른 상장폐지는 제외한다) (2)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제9호에 따른 이전상장을 위한 상장폐지를 신청한 때 사. 법 제161조제1항제6호의 사항이 발생한 때 아.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12조에 따른 신규상장신청을 한 때 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조에 따른 상장예비심사신청을 한 때 차.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1조에 따른 상장예비심사신청을 한 때 3. 해당 기업성장투자신탁의 존립과 구조에 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유발생일 다음 날까

	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 법 제182조제8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때 나. 법 제188조제2항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이 있은 때 다. 법 제193조에 따라 합병을 한 때 라. 법 제192조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한 때 마. 법 제25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때 4. 해당 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 상장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유발생일 다음 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 금융위원회로부터 법 제420조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운용을 위한 인가 취소 처분을 받은 때 나. 금융위원회로부터 법 제420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정지 처분을 받은 때 다. 금융위원회로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7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정지를 명받은 때 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때 5. 해당 기업성장투자신탁과 관련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유발생일 다음 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 수익자총회의 결과 나.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의 분배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 다. 최근 회계기간의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라. 법 제240조에 따라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이외에 해당 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 상장법인의 주가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신 설>	제50조의8(정기보고서 등의 제출) 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 상장법인은 법 제88조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 법 제90조에 따른 영업보고서,

	법 제239조에 따른 결산서류를 법정제출기한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50조의9(조회공시) ① 거래소는 제50조의7과 제50조의8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으로서 풍문 또는 보도 등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 상장법인에게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공시매체를 통하여 해당 조회공시 요구사실과 그 내용을 공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실여부확인 요구를 받은 해당 법인은 요구일 다음 날까지 제50조의6에 따른 방법에 따라서 공시내용을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풍문 또는 보도의 내용이 1월 이내에 해당 법인이 이미 공시한 사항인 경우에는 조회공시를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조회공시 대상, 풍문 또는 보도의 범위, 그 밖에 조회공시와 관련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2절 기업성장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신 설>	제50조의10(공시신고사항) 기업성장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의 내용을 각 호에 따른 기한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기한 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1. 해당 기업성장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이 투자한 자산(법 제81조제5항제4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사유발생일 다음 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 법 시행령 제241조의3제9항제1호와 관련하여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자산(조합등을 통해 투자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해당 분기 중 취득·처분한 때 나.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자산(상장주식은 제외한다)의 평가금액이 직전 평가일 대비 100분의 50 이상 변동한 때(다만, 직전 평가일 이

	후 해당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시점의 평가금액 대비 100분의 50 이상 변동한 때) 다.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한 상장주식(조합등을 통해 투자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기존 보유수량 대비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해당 분기 중 추가취득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 처분한 때 라.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등(법 시행령 제139조에 따른 증권으로서 조합등을 통해 투자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기존 보유수량 대비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해당 분기 중 추가취득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 처분한 때 마.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산(다·라목의 자산은 제외한다)을 직전 평가일 기준 평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해당 분기 중 추가취득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 처분한 때(다만, 직전 평가일 이후 해당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시점의 평가금액 대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해당 분기 중 추가취득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 처분한 때) 2. 법 시행령 제241조의3제9항제2호와 관련하여 해당 기업성장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한 주투자대상기업(조합등을 통해 투자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날의 다음 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때 다. 영업의 전부가 정지된 때 라. 「상법」 제517조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마. 법 시행령 제81조의2제3항제2호가목의 주권상장법인으로

	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1) 상장폐지된 때(신청에 따른 상장폐지는 제외한다) (2)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상장폐지를 신청한 때 바. 법 시행령 제81조의2제3항제2호나목의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1) 상장폐지된 때(신청에 따른 상장폐지는 제외한다) (2)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제9호에 따른 이전상장을 위한 상장폐지를 신청한 때 사. 법 제161조제1항제6호의 사항이 발생한 때 아.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12조에 따른 신규상장신청을 한 때 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조에 따른 상장예비심사신청을 한 때 차.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1조에 따른 상장예비심사 신청을 한 때 3. 해당 기업성장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의 존립과 구조에 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유발생일 다음 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 법 제182조제8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때 나. 법 제204조에 따라 합병을 한 때 다. 법 제202조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라. 법 제25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때 4. 해당 기업성장투자회사를 설립한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에 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유발생일 다음 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 금융위원회로부터 법 제420조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운용을 위한 인가 취소 처분을 받은 때 나. 금융위원회로부터 법 제420

	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정지 처분을 받은 때 다. 금융위원회로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7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정지를 명받은 때 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때 5. 해당 기업성장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의 기업경영활동과 관련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유발생일 다음 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확인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가. 주주총회의 결과 나.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의 분배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 다. 증자 또는 감자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라. 해당 기업성장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에 대하여 세칙에서 정하는 소송 등의 절차가 제기·신청된 때 마. 최근 회계기간의 말일을 기준으

	로 자기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바. 법 제240조에 따라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이외에 해당 기업성장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의 주가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신 설>	제50조의11(정기보고서 등의 제출) 기업성장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은 법 제88조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 법 제90조에 따른 영업보고서, 법 제239조에 따른 결산서류를 법정제출기한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50조의12(조회공시) ① 거래소는 제50조의10과 제50조의11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으로서 풍문 또는 보도 등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업성장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에게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공시매체를 통하여 해당 조회공시 요구사실과 그 내용을 공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실여부확인 요구를 받은 해당 법인은 요구일 다음 날까지 제50조의6에 따른 방법에 따라서 공시내용을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풍문 또는 보도의 내용이 1월 이내에 해당 법인이 이미 공시한 사항인 경우에는 조회공시를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조회공시 대상, 풍문 또는 보도의 범위, 그 밖에 조회공시와 관련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3장 불성실공시
<신 설>	제50조의13(불성실공시의 유형) 거래소는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불성실공시로 본다.
	1. 공시불이행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50조의7부터 제50조의12까지 및 제50조의22에 따른 공시사항을 해당 신고기한까지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50조의7부터 제50조의12까지 및 제50조의22에 따른 공시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잘못

	공시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공시하는 경우 2. 공시번복 : 제50조의7부터 제50조의12까지에 따라 이미 공시한 내용을 전면 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하는 경우 3. 공시변경 : 제50조의7과 제50조의10에 따라 이미 공시한 내용의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로서 세칙에서 정하는 내용을 공시하는 경우
<신 설>	제50조의14(자료의 제출요청) 거래소는 불성실공시 해당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 설>	제50조의15(불성실공시 적용 예외) ① 거래소는 제50조의1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로 보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 규정 등에 의해 불가피한 경우 2. 천재지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3.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법인이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거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② 거래소는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법인에 대하여 공시내용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50조의16(불성실공시에 대한 조치) ① 거래소는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법인이 제50조의13에 따른 불성실공시를 한 경우에는 공시매체를 통하여 이를 공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거래소가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법인의 불성실공시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 사실과 경위 등을 증권시장지에 불성실공시를 한 날부터 5일간, 전자공시매체에 1월간 각각 게재한다. ③ 거래소는 제50조의15에 따른 불성실공시의 적용예외를 인정하여 불성실공시 내용을 공시매체에 공표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성장집

	합투자증권 상장법인에게 주의촉구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불성실공시 내용의 공표, 주의촉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50조의17(공시의무 이행실태 점검 등) ① 거래소는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법인이 이 규정에 따라 공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은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법인이 제출한 영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 각종 신고서류 그 밖의 증빙자료의 요청 또는 현지출장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거래소는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법인에 대하여 공시내용과 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 이행실태 점검과 관련하여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거래소는 법 제392조제2항과 법 시행령 제361조에 따라 행정기관 그 밖에 관계기관에 기업성장집합

	투자증권 상장법인의 공시내용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 또는 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4장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법인 관리
<신 설>	제50조의18(매매거래의 정지) ①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1. 제50조의9와 제50조의12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에 대하여 그 신고시한까지 응하지 아니한 때 2.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매매거래의 정지와 재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50조의19(시장신고 사항) ① 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 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수익증권 원부 등록폐쇄 또는 기준일 설정 2.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본점

	소재지 변경 3.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변경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에 시장관리를 위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 ② 기업성장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2. 본점 소재지 변경 3.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변경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에 시장관리를 위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
<신 설>	제50조의20(시장안내사항)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체 없이 공시한다. 1. 신규상장, 추가상장, 변경상장, 관리종목의 지정과 지정해제, 상장폐지사유 발생, 제50조의18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8조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종목의 지정과 지정해제 2. 조회공시 요구내용과 공시시한 3.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50조의21(거래소에 의한 공시유보)

	거래소는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법인의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의 공시를 일정기간 유보할 수 있다. 1. 공시내용이 관계 법규를 위반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때 2. 공시내용의 근거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그 내용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때 3. 그 밖에 건전한 코스닥시장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
<신 설>	제50조의22(기 공시내용의 변동사항 신고)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법인은 제50조의7부터 제50조의12까지에 따라 공시한 후 해당 공시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 내에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기 공시내용이 사유발생일 다음 날까지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다음 날 2. 기 공시내용이 사유발생 확인일

	의 다음 날까지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유발생 확인일의 다음 날
<신 설>	제50조의23(공시책임자 등의 신고) ① 이 편에 따른 공시는 해당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법인의 공시책임자가 하여야 한다. ②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법인은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 각 1인을 정하여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의 신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50조의24 (영문공시)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법인은 한글로 공시한 후 5매매거래일 이내에 영문으로 공시할 수 있다.
제2편 (생 략)	제3편 (현행 제2편과 같음)
제3편 (생 략)	제4편 (현행 제3편과 같음)
제4편 (생 략)	제5편 (현행 제4편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자산운용과
연 락 처	02-2100-2664